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보육정보 - 가정양육수당지원	3
지원대상안내	3
부모급여지원	3

아동복지

보육정보

청소년복지

- 보육료지원
- **가정양육수당지원**
- 보육시설현황

지원대상안내

- 지원대상 : 어린이집·유치원(특수 학교포함)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아동(부모 급여 도입에 따라 '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이후 양육수당 지원
- 지원연령 : 수당 신청일 현재 만5세아(최대 86개월 미만) 취학 전인 아동 *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
- 지원금액 : 월령별로 10~20만원 월 정액지원(월·인)

연령(개월)	양육수당	연령(개월)	농어촌양육수당	연령(개월)	장애아동양육수당
0~11	200천원	0~11	200천원	0~35	200천원
12~23	150천원	12~23	177천원		
24~35	100천원	24~35	156천원		
36개월이상~86개월 미만	100천원	36~37	129천원	36개월 이상~86개월 미만	100천원
	100천원	48개월 이상~86개월 미만	100천원		
	100천원		100천원		
	100천원		100천원		

부모급여지원

- 지원대상 : 23년기준 만 0~1세 아동
- 지원금액 : 만 0세 월 70만 원, 만1세 월 35만 원
- 어린이집 이용유무(미이용) → 부모급여(현금) → 만0세 : 현금 70만원 / 만1세 : 현금 35만원
- 어린이집 이용유무(이용) → 부모급여(보육료) → 만0세 : 바우처 51.4만 원 + 현금 18.6만 원 / 만1세 : 바우처 51.4만 원

GANGJIN

Web Contents

